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 또는 단체명		기관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신청인 전화번호		
기관 또는 단체 소재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